



지방의회 주민참여

가능성과 대안은?

1 지방의회 주민참여 필요성

지방의회란?

▶ 지방의회는 헌법기관(헌법 제118조)으로, 주민이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로 선출한 주민의 대표로 구성됨(지방자치법 제38조)

▶ 선거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합의제 의결기관임 (김순은,2015)

지방의회 주민참여의 현재



▶ 최근 정부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주민참여는 여전히 의원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음

▶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 현행법 체계 상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주민참여가 중심이 될 수 밖에 없음

지방의회 주민참여 왜 필요한가?

▶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고, 참여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지방의회도 주민참여 확대 방안 모색이 필요함

▶ 이에 대해 민주의원연맹은 입법과정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활성화, 주민의 민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그 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톨킷을 제작 및 배포함

▶ 해외사례를 통해 국내에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

*미주 의원연맹(ParlAmericas)은 미주 35개 국가 의회로 구성된 독립적 네트워크로서 국내적·국제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, 아메리카 지역 공통의 이슈에 대하여 의회 간의 대화를 증진 및 발전시키고 의회운영의 우수사례에 해당되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협력적인 정치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(ParlAmericas, 2018).

2 지방의회 주민참여 설계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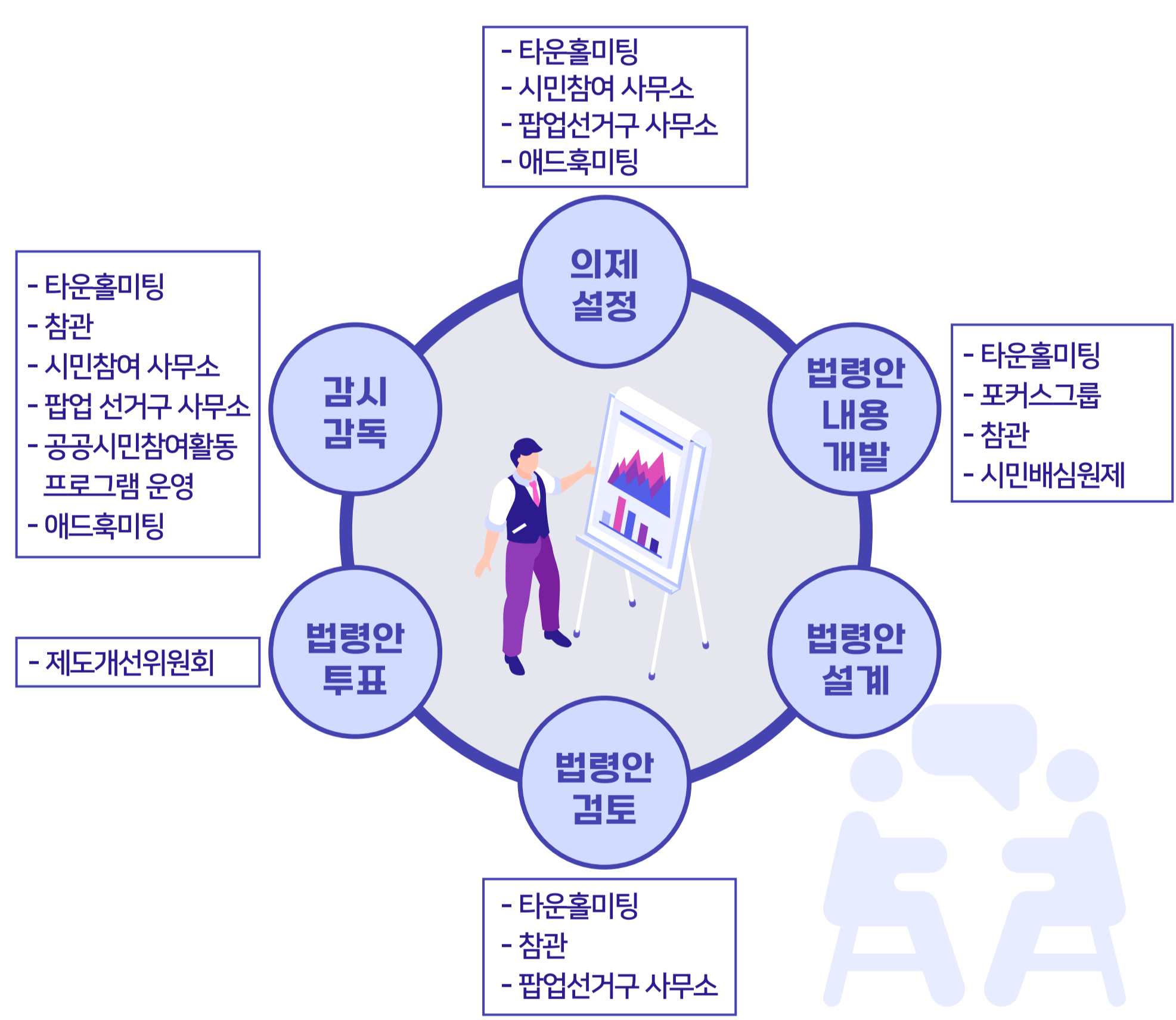
주민참여의 원칙

개방성 Openness	→	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정도
투명성 Transparency	→	정책결정과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및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한 정보제공의 정도
상호작용성 Reciprocity	→	주민참여의 정도, 주민참여의 구체화 정도
표현에 대한 존중 Respect for Self-Expression	→	주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
포용성 Inclusiveness	→	소외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도
비례성 Proportionality	→	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는 정도
접근성 Accessibility	→	정보에 대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정도
보완성 Complementarity	→	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정도
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	→	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도
시의성 Timeliness	→	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주는 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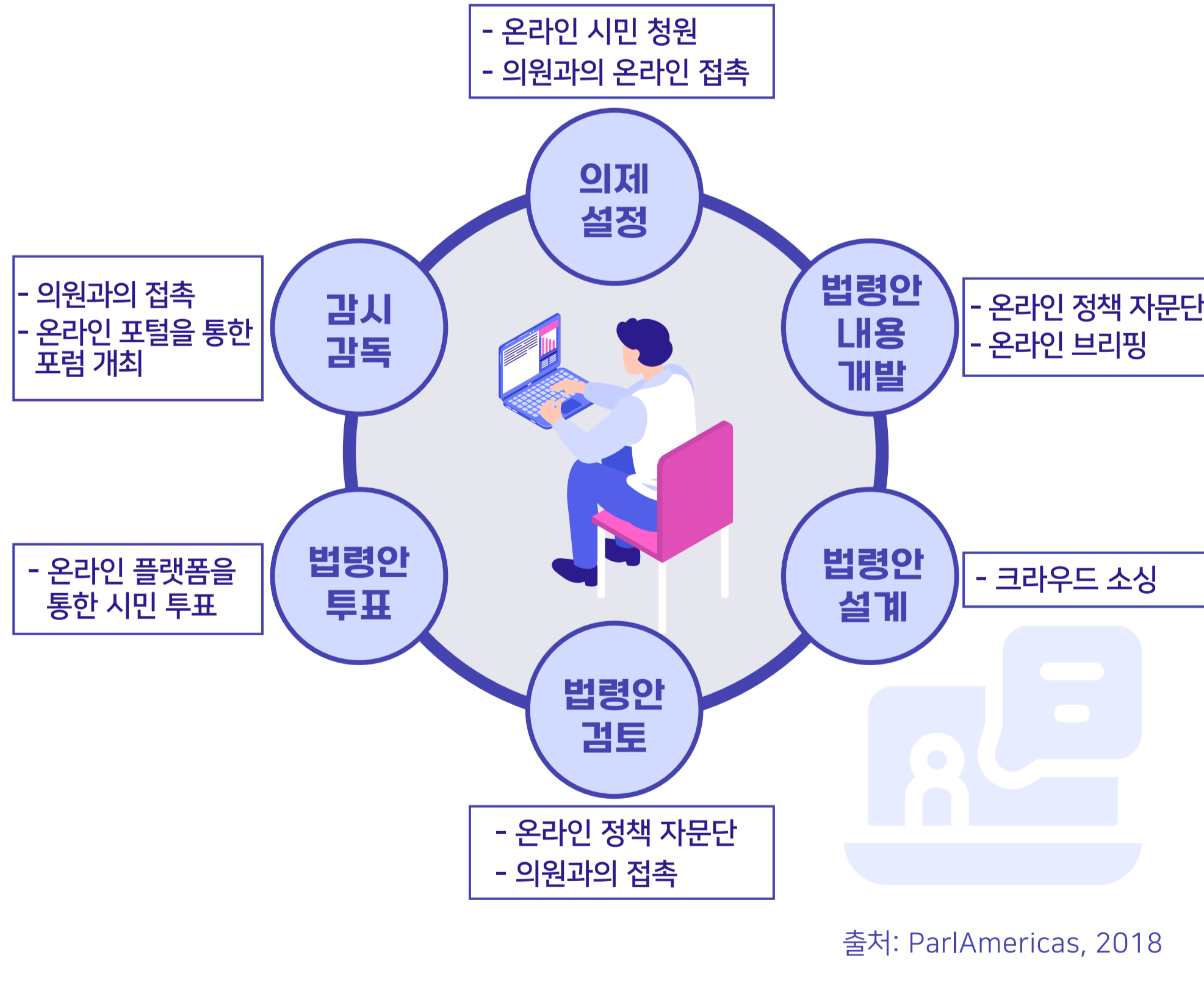
출처: ParlAmericas, 2018

지방의회 주민참여 설계방안

▶ 오프라인 입법 프로세스에서 활용 가능한 주민참여의 방법



▶ 온라인 입법 프로세스에서 활용 가능한 주민참여의 방법



출처: ParlAmericas, 2018

국내법 및 조례 개정 필요

▶ 지방의회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법 및 조례 개정 필요

▶ 주민참여 확대에 대한 지방의장의 권한을 명시하고,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



3 향후 연구 추진방향



• 현행 지방의회 주민참여 제도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실시, 대안 개발

• 주요 지역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의회 주민참여 모델 제시

• 지방의회 주요 기능별 주민참여 방안 제시

본 인포그래픽은 현재 연구진행중인 "지방의회 주민참여 및 소통 활성화 방안 연구(2022년 기본과제)"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것입니다.

#주민참여 #시민참여 #지방의회 #지방자치법 #소통

[참고문헌]

김순은. (2015). 지방의회의 발전모형. 서울: 조명문화사.
ParlAmericas. (2018).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. Citizen Participation: Canada. Retrieved from

[내용문의]

김기수 (한국지방행정연구원, 부연구위원, 033-769-9857, jjsookim@krila.re.kr)